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요

National Safety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Summary

이 수 현 • 김 충 겐

Lee. Soo-Hyun • Kim. Choong-Gyeom

요 약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 서 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2. 주 요 내 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통합·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내용과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점검 및 평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대 재난은 도시화,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난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주어진 만큼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내기 어렵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한계점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각종 대형 재난사고에 국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안전교육의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이러한 안전교육들을 어린이집의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수단, 여객선, 항공기,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등의 다중이용시설 시설관리자나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안전교육을 얼마나 또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실행여부일 것이다.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자영업자나 전업주부, 노인 등 안전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관 및 사회단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시민안전의식교양을 위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종사자, 기관 및 단체 안전책임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산업체 안전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주전에 교육을 신청하면 해당 안전 분야의 전문 강사가 찾아가 무료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다.

라.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따른 자체 평가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각종 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미흡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사의 강의능력과 교육내용 또한 향상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닥칠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마.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 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교육 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이며, 이 중 전국 소방관서의 안전교육담당자 406명과 소방안전교육사(국가 자격자) 91명을 제외한 나머지 90.6%는 15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자들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력 수급과 활용, 육성, 교육 훈련, 경력관리와 경력인증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결론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심의 의결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난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원활한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 법을 통해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하여금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대한민국 법제처 (<http://www.moleg.go.kr/>)